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하부조직의 분장 사항에 관련 직무를 반영하고 해당 채용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에 다중운집인과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찰청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3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명, 경장 23명, 순경 2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무인사기획관 1개 담당관과 생활

안전교통국 2개 과 중 1개 과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도경찰청에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1,131명(경정 8명, 경감 28명, 경위 113명, 경사 357명, 경장 399명, 순경 181명, 7급 21명, 8급 24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정원 6명(경정 2명, 순경 4명),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도경찰청의 정원 29명(경장 28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서의 정원 298명(경정 3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35명, 순경 92명, 6급 1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4. 12. 00. ~ 2024.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
에 관한 사항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8명”을 “629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0”을 “1,88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22”를 “1,220”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02”를 “1,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3”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37”을 “63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90”을 “134,17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32”를 “129,748”로 하며, 총경 이하 “129,831”을 “129,647”로 하고, 일반직 계 “4,364”를 “4,33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42”를 “4,311”로, 전문경력관 “19”를 “18”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생활안전교통국 1개 과	3명
나. 수사기획조정관	1명
다. 수사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8명
라. 수사국 1개 과	2명
마. 형사국	1명
바. 국가수사본부 1개 담당관	6명
사. 국가수사본부 1개 과	1명
아. 미래치안정책국	1명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2)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4)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19명
5)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6)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7)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8)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9)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10)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11)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12)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96명
13) 강력범죄수사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69명
14) 학교폭력 대응 업무(시·도경찰청)	10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 별표 4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5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교무처) ① (생 략)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생 략)	제27조(교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u> <u>규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u> <u>12. (현행 제11호와 같음)</u>
제33조의2(교수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33조의2(교수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u>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u> <u>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u> <u>실기시험에 관한 사항</u>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 경의 정원은 <u>628명</u> 을, 4급 공무 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 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629명</u> ----- ----- ----- -----

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90</u>	<u>1,887</u>	-3
경찰공무원 계	<u>1,222</u>	<u>1,220</u>	-2
·	·	·	
·	·	·	
총경 이하	<u>1,202</u>	<u>1,200</u>	-2
일반직 계	<u>664</u>	<u>663</u>	-1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637</u>	<u>636</u>	-1
·	·	·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390</u>	<u>134,174</u>	-216
경찰공무원 계	<u>129,932</u>	<u>129,748</u>	-184
·	·	·	
·	·	·	
총경 이하	<u>129,831</u>	<u>129,647</u>	-184
·	·	·	
·	·	·	
일반직 계	<u>4,364</u>	<u>4,332</u>	-32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42</u>	<u>4,311</u>	-31
전문경력관	<u>19</u>	<u>18</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2